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31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구역 위반자에 대하여, 과태료 부과처분(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-25호) 기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의 사유로 연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5년 10월 23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간연장

1. 인적사항: 정0진(78년생, 서울특별시 소재)
2.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
 - 가. 근거법령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
 - 나. 처분원인: 2025. 5. 30.(수) 09:56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다. 부과내용: 과태료 200,000원
3. 공고기간: 2025. 9. 11. ~ 12. 4.
4. 공고기간 연장사유: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기한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(9.26.)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열람 불가, 이에 따라 접속 불가기간(9.26.~10.19./24일)을 반영하여 시스템 복구 후 공고 게시일로부터 24일간 공고기간 연장
※ 기존 공고기간: 2025. 9. 11. ~ 11. 10. /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5-25호
5. 공고내용
 - 가.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서 해양안전과(☎041-950-2548)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 - 다. 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.
 - 라.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☎041-950-25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